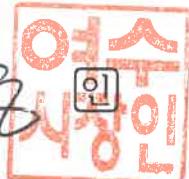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 월 6 일

여 수 시 장

2023.12.6



여수시 조례 제1997호

붙임 여수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1부

여수시 여수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 라. 그 밖에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u></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p>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p>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p> <p>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p>
<p><u>제5조 (생 략)</u></p>	<p><u>제7조 (현행 제5조와 같음)</u></p>
<p><u>제6조 · 제7조 (생 략)</u></p>	<p><u>제5조 · 제6조 (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u></p>